

# 2021년도 제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3. 30.(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5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42건(안전번호 제2021-30881호~3122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30881호~30883호는 영화 일부 장면을 사용하여 카드 뉴스 등을 제작, 게시한 사안으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불여지가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영화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30884호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단순 링크를 설정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원천게시물인 해외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우리 심의위원회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정보로 판단한 URL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을 해외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30885호는 해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제공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불법복제물등”인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30886호~30887호는 네이버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31199호~3122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를 판매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66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39건(안건번호 제2021-1044호~1082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안건 6건은 가결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33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3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개 안건(1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모두 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6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5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E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



- B, D,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0881호~30883호는 게시물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30884호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한 사안으로 개인 블로그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단순 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제2021-30884호의 경우 설치형 블로그로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경우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도메인을 받아서 일반 홈페이지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설치형 블로그의 경우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상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있으면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설치형 블로그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설치형 블로그의 개별 게시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 E 위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일부 필터링만 할 수 있으므로 설치형 블로그는 블로그 운영자를 상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보아야 함.
- C 위원: 기존 심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복제·전송자가 되는 경우에도 시정권고를 가결한 취지는 상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없이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불법 복제물을 올렸을 때 현행법상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결을 한 것임. 예를 들어 ♣♣♣의 직원이 ♣♣♣에 불법복제물을 올린 경우에도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결한 것임. 상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상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 것임. 설치형 블로그가 ♣♣♣의 예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생김.
- E 위원: 설치형 블로그 운영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OSP로 보아야 하고, 그 운영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함. 설치형 블로그는 개인 사용자를 위한 블로그 플랫폼 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웹계정으로 블로그를 만들어, 개인이 블로그를 관리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럼 블로그 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서비스형 블로그와는 다름.
- A 위원: 해당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논의의 의의가 있는 부분으로, 현행법 하에서 시정권고의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임.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타인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주는 것인데, 자기가 관할하는 서비스 범위 내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귀속하는 형태로 이

론구성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임.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음.

- 오진해 전문위원: 온라인서비스의 위계상으로는 개인의 설치형 블로그라도 네이버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음. 제2021-30885호도 유사한 경우여서 함께 보고드리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30885호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한 사안으로, 개인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제2021-30885호 블로그는 ♪♪♪♪♪으로 요즈음 유행하는 서비스임. 홈페이지 서버같이 블로그 서버가 별도로 있고 이용자가 마음대로 블로그를 만들 수 있음. ♪♪♪♪♪은 사무실 빌려주듯이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공간만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임. □□□ 같은 OSP들에서 불법 공유를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은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자들끼리 공유를 할 수 있는 상황임.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도 제재를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 C 위원: E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형 블로그가 대세라면 우리 입법도 이를 쫓아가야 하는데, 현행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불법



복제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불법 복제하는 사람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1-30884호~30885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0884호~3088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30886호~30887호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및 일반인 신고를 통해 블로그에 게재된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0886호~3088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30888호~3119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음악, 게임,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나이프스 아웃 (2018)'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30958호 영화 '나이프스 아웃 (2018)'는 2019. 12. 4.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95포인트에 판매 중임.  
(영화 '호빗 : 뜻밖의 여정 (201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31081호 영화 '호빗 : 뜻밖의 여정 (2012)'은 2012. 12. 13.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460포인트에 판매 중임.  
(방송 '워킹데드(201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31109호 방송 '워킹데드(2010)'은 2019. 10. 6.부터 서비스 중인 해외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2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3건을 포함한 662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30888호~3119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C, D, E 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0888호~3119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31199호~3122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보호원이 현재 최우선 조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하고 있는 영화 '★★★★★★★★★★'임.(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웹하드 사이트에 해당 영화가 게시되어 있음.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C, D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1199호~3122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30881호~30883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30884호~30885호, 제2021-30886호~30887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30888호~3122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8쪽부터 3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044호~1082호 중 6개 안전은 가결하고, 33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3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개 안전(1개 안전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4 6.

분과위원장 권현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